

##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7. 12. 20  
내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년 12월 2일 이천시장 제출  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2월 6일  
다. 상정일자 : 제19회 이천시의회(정기회)  
    제1차(97. 12. 15) 내무위원회 상정  
    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시세 구제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서류의 송달은 이천시통·리·반설치조례에 의한 통·리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,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2).
- 시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시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(안 제14조).
-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,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당연직·위촉

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은 지방세관련  
국·과장 3인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지방세를 담당한 전직공무원, 판사  
등 법조인,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, 지방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<sup>1</sup>  
풍부한 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위촉함(안 제14조의2).  
· 지방세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을 정함(안 제20조의 2)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안봉환)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신설에 따라 지  
방세 관련 고지서와 독촉장, 최고장등 각종 서류의 송달시 통·리·반장을  
통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매당 500원의 수당지급과 함께 교부할 수 있도  
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  
하여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정비하며,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  
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 
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산세의 일부 세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 
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### 7. 기타사항 : 없음

## 이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 (서류의 송달)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이천시통·리·반설치조례에 의한 통·리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부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500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중 “심의하기 위하여”를 “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”를 “세제분과위원회·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서”로 하고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 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당연직·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은 지방세관련 국·과장 3인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
2. 판사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3.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4.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
5.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부과계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.

⑦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 (세율)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1. 건축물

(1)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<과세표준>	<세율>
1,200만원이하	1,000분의 3
1,200만원초과	3만6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
1,600만원이하	
1,600만원초과	5만6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
2,200만원이하	
2,200만원초과	11만6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
3,000만원이하	
3,000만원초과	35만6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
4,000만원이하	
4,000만원초과	85만6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

(2)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

(3) 영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 거지역 및 시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영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

(4)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### 2. 선박

(1) 고급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

(2) 제1목 이외의 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### 3. 항공기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14조의2 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u>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은 지방세관련 국·과장 3인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</li> <li>2. 판사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li> <li>3.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</li> <li>4.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</li> <li>5.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/ol> <p>③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충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부과계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.</p> <p>⑦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취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⑧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제20조의2 (세율)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건축물</p> <p>(1)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table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과세표준&gt;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세율&gt;</b></td> </tr> <tr> <td><u>1,200만원 이하</u></td> <td><u>1,000분의 3</u></td> </tr> <tr> <td><u>1,200만원 초과</u></td> <td><u>3만6천원 + 1,200만원 초과</u></td> </tr> <tr> <td><u>1,600만원 이하</u></td> <td><u>금액의 1,000분의 5</u>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<u>1,600만원 초과</u></td> <td><u>5만6천원 + 1,600만원 초과</u></td> </tr> <tr> <td><u>2,200만원 이하</u></td> <td><u>금액의 1,000분의 10</u>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<u>2,200만원 초과</u></td> <td><u>11만6천원 + 2,200만원 초과</u></td> </tr> <tr> <td><u>3,000만원 이하</u></td> <td><u>금액의 1,000분의 30</u>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<u>3,000만원 초과</u></td> <td><u>35만6천원 + 3,000만원 초과</u></td> </tr> <tr> <td><u>4,000만원 이하</u></td> <td><u>금액의 1,000분의 50</u></td> </tr> <tr> <td> </td> <td> </td> </tr> <tr> <td><u>4,000만원 초과</u></td> <td><u>85만6천원 + 4,000만원 초과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u>금액의 1,000분의 70</u></td> </tr> <tr> <td>(2)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</td> <td><u>그 가액의 1,000분의 50</u></td> </tr> <tr> <td>(3) 영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시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영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4)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. 선박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1) 고급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2) 제1목 이외의 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. 항공기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<b>&lt;과세표준&gt;</b>	<b>&lt;세율&gt;</b>	<u>1,200만원 이하</u>	<u>1,000분의 3</u>	<u>1,200만원 초과</u>	<u>3만6천원 + 1,200만원 초과</u>	<u>1,6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5</u>	 	 	<u>1,600만원 초과</u>	<u>5만6천원 + 1,600만원 초과</u>	<u>2,2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10</u>	 	 	<u>2,200만원 초과</u>	<u>11만6천원 + 2,200만원 초과</u>	<u>3,0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30</u>	 	 	<u>3,000만원 초과</u>	<u>35만6천원 + 3,000만원 초과</u>	<u>4,0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50</u>	 	 	<u>4,000만원 초과</u>	<u>85만6천원 + 4,000만원 초과</u>		<u>금액의 1,000분의 70</u>	(2)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	<u>그 가액의 1,000분의 50</u>	(3) 영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시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영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		(4)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		2. 선박		(1) 고급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		(2) 제1목 이외의 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		3. 항공기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		
<b>&lt;과세표준&gt;</b>	<b>&lt;세율&gt;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,200만원 이하</u>	<u>1,000분의 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,200만원 초과</u>	<u>3만6천원 + 1,200만원 초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,6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1,600만원 초과</u>	<u>5만6천원 + 1,600만원 초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2,2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1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2,200만원 초과</u>	<u>11만6천원 + 2,200만원 초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3,0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3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3,000만원 초과</u>	<u>35만6천원 + 3,000만원 초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4,000만원 이하</u>	<u>금액의 1,000분의 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4,000만원 초과</u>	<u>85만6천원 + 4,000만원 초과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금액의 1,000분의 7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골프장·별장·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	<u>그 가액의 1,000분의 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3) 영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시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영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4)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선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고급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제1목 이외의 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항공기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